

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7일
신청인	① 대표자성명		② 생년월일	
	③ 법인명	(전화:)		
	④ 주소	(전화:)		
⑤ 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
⑥ 변경사유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·도지사 귀하				
※ 첨부서류 1. 신·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.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(자동차번호, 차종, 연식, 등록일, 길이, 너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)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나.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3.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4.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변경사유서 1부 나.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				수수료 증차: 5,000원 자동차 1대당 2,000원 추가 기타: 2,000원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